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5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0가단146549 손해배상(기)

원 고

1. [Redacted]

2. [Redacted]

3.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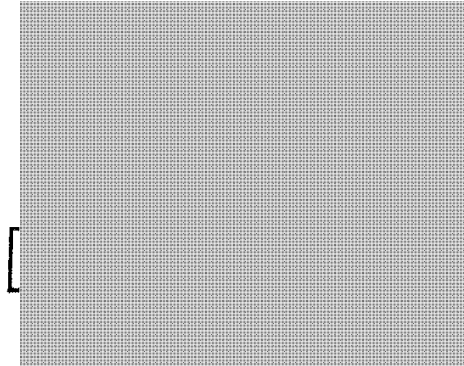
4. [Redacted]

5. [Redacted]

6.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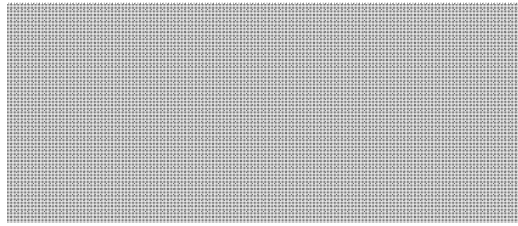
7. [Redacted]

8. [Redacted]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01.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redacted], [redacted]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redacted]에게 금 200,000원, 원고 [redacted], [redacted]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2001.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redacted], [redacte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redacted], [redacte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redacted]에게 금 5,000,000원, 원고 [redacted], [redacted]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이전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들로서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여만 이동이 가능한 중증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 당시 만 20세 이상이 되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별지 2 목록 기재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이 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000. 9. 15.자 접수 사실조회결과,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 피고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그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참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들이 각 주장하는 구체적인 의무위반의 내용은 아래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의 2, 3층 또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1층에 원고들의 투표소를 설치하였다.

② 피고는 위 각 투표소에 장애인의 출입을 편의시설 내지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居所)투표의 절차를 밟기 어려운 원고들에게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 제도(이하, 부재투표제도 등이라고 한다)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 안내 및 신청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



3. 장애인에 대한 피고의 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

가.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법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포함한 만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헌법 제24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5조), 국가인 피고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6조),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제23조), 위 관련 법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투표소 설치의 기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면, 투표소는 당해 투표구 내 또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인접한 투표구 내의 장소 가운데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47조 제2항),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47조 제4항),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은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경찰 공무원 등의 원조를 받아 투표소 내외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164조, 제166조).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투표소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선거인의 접근, 출입 및 투표행위에 있어서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또 투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도 적합한 곳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투표의 편의성, 투표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소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권리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을 보장하는 위 규정(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47조 제2항)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실제 행사함에 있어 그 현실적인 장애를 최소화하여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투표의 편의성과 투표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이 상충할 경우 투표의 편의성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투표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한 선거인이 투표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을 투표소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고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장애인복지법 제23조),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투표소 설치의 기준에 따라 투표소로 선택된 장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울 경우 피고는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에 대한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운영

(1)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투표제도 등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 시, 읍, 면의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서의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서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상태, 보호자, 거주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단을 통하여 신청인이 위 법 소정의 장애인임이 확인되면 그 장애등급, 보호자, 거주지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그러한 사항이 기재



된 장애인등록증을 그 장애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위 관련법규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내의 장애인등록현황에 관하여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의 수 및 그 분기별 전입, 전출 및 그 증감 현황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장애인등록관련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3) 부재자투표제도 등에 있어서의 장애인 배려의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인이 부재자투표제도 등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부재자신고서식에 따라 부재자신고 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등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위와 같은 절차를 스스로 밟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신체장애인에게 보호자 마저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이용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 투표소에 가지도 못하고 부재자투표제도 등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에 관하여 그 장애등급, 보호자 유무, 거주지 이동 등 장애인등록의 현황을 상세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 이전에 등록장애인 가운데 그 장애등급에 비추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등록된 보호자도 없는 장애인의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재자투표제도 등을 운영함에 있어 적어도 그 장애등급에 비추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장애가 있고 보호자도 없어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서식



과 부재자투표제도 등에 대한 안내서를 송부하여 주는 등으로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이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그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원고 [redacted] 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투표소는 도척면 복지회관 2층에 설치되었는데 위 건물에는 1층 출입을 위한 장애인용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2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 갈 수 밖에 없었고, 위 건물의 1층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안내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에 위 원고와 투표소에 동행한 그 아버지가 투표소로 올라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소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한 문제를 두고 그 아버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위 원고는 투표를 포기하였다.

(다) 위 투표구의 경우의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도척면사무소 1층에, 1995년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6년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선거 및 1998년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각 [redacted] 중학교 1층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증인 [redacted]

[redacted]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선거 이전의 위와 같은 투표소 설치 상황을 고려할 때 도척면사무소 1층이나 [redacted] 중학교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적정하고 공정한 투표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도척면사무소 1층이나 [redacted] 중학교 1층에 비하여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도척면 복지회관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을 제5호증의 [redacted] 9 및 이 법원의 중앙선거관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의 투표구가 도척면 전투표구를 관할하는 대항투표구인 관계로 전투표구의 투표관리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면사무소와 가까운 곳에 투표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도척면사무소 1층은 내부의 여러 설비로 인하여 투표소 설치에 부적합하였고, [redacted] 중학교 1층은 면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학교측이 학교시설 등의 훼손을 들어 그 설치를 반대하여 부득이 도척면 복지회관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투표소 설치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울러, 피고는 위 도척면 복지회관 1층에는 장애인의 출입을 도울 안내요원이 배치하지 않은 점에서도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

(다) 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그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redacted] 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투표소는 6개의 계단을 올라간 위에 있는 [redacted] 중학교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달리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나 투표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위 원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 가던 중 생각을 바꾸어 다시 투표소로 되돌아 갔고, 그 앞에서 약 5분 가량 기다리다가 다른 투표자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로 들어 갈 수 있었으며, 투표를 마친 뒤에는 선거관리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투표소를 나올 수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 3, 원고 [redacted] 본인신문,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투표소가 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학교 건물의 1층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위 투표소 설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곳에 장애인용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출입을 도울 안내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그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redacted] 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위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된 중증의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하고자 동사무소에 문의해 봤으나 통, 반장의 확인서를 선거일 15일전에 받아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이용을 포기하였다.

(나) 이에 위 원고는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 하였으나 선거 당일 그 어머니를 통하여 해당 투표소가 삼성동 동사무소 3층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그 투표소까지



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포기하였다.

(다) 한편, 위 원고는 1992년의 대통령선거와 1997년의 대통령선거 당시 [redacted] 소 재 [redacted] 고등학교 건물 1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계단을 올라가 힘들 게 투표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원고 [redacted] 본인신문, 변론 의 전취지]

(2) 판 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중증의 신체장애인이기는 하나 등록된 보호자가 있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부재자투표제도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그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위 원고가 과거에 두 번이나 [redacted] 고등학교 1층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던 점에 비추어 [redacted] 고등학교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적정하고 공정한 투표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redacted] 고등학교 1층에 비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이 상당히 어려운 삼성동 동사무소 3층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와 같은 투표소 설치의 위법으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되 었고 그 결과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에 대하여

(1) 위 원고들의 주장

(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자신들의 해당 투표소가 별지 2 목록 기재



와 같이 모두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 곳에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데다가 달리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로는 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포기하고 아예 투표소에도 가지 않았다.

(나) 위 원고들은 모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된 중증의 신체장애인들로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부재자투표제도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투표소 설치의 위법성 여부

위 원고들의 해당 투표소가 위 주장과 같이 계단이나 턱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의 1층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고의 위 투표소 설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원고들이 해당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및 안내요원의 미배치로 인하여 그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그러한 피고의 의무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그로 인하여 그 각 선거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의 배려의무 위반 여부

① 원고 [redacted] [redacted] 는 별지 1 목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증의 신체장애인(원고 [redacted] - 장애등급 1급 1호, 양하지마비, 원고 [redacted] - 장애등급 1급 1호, 뇌성마비)으로 달리 등록된 보호자가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부재자투표 등에 관한 아무런 안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신체장애와 보호자 부재로 인하여 투표소에 가지 못하였고 달리 부재자투표제도 등을 이용하지도 못한 사실(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1, 4,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의 전



취지)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재자 투표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 [redacted] [redacted] 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 1 목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행정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들이긴 하나 등록된 보호자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제도 등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5.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에 대한 위자료

따라서,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가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의무위반으로 그 선거권 행사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원고들의 장애정도 및 선거권 행사에 대한 태도, 피고의 의무위반의 태양, 선거권 침해의 경위 및 그 내용, 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redacted] [redacted] 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원, 원고 [redacted] 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원, 원고 [redacted] [redacted] 에 대한 위자료는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redacted] [redacted] 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redacted] 에게 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5

200,000원, 원고 [redacted] [redacted]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0.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0.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원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3. 21.

판사 장준현 —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5

(별지 1)

원고들의 신체장애 현황

원고	등록관청	등록일	장애 등급	등록 보호자	장애내용
	부산직할시장	1989. 3. 11.	지체장애 2급 2호	(부)	
	종로구청장	1998. 5. 12.	지체장애 1급	없음	양하지소아마비
	서울특별시장	1989. 2. 13.	지체장애 1급	(부)	뇌성마비
	송파구청장	1998. 3. 28.	지체장애 1급 1호	없음	양하지마비
	강남구청장	1998. 3. 5.	지체장애 1급 1호	(모)	뇌성마비
	시흥시장	1998. 2. 5.	지체장애 2급 2호	(모)	뇌성마비
	은평구청장	1996. 2. 23.	지체장애 1급 1호	없음	뇌성마비
	송파구청장	1994. 12. 21.	지체장애 1급 1호	(부)	뇌성마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3-25

(별지 2)

투표소설치 상황

원고	투표소명	투표소 설치 장소
	경기 광주군 도척면 제1투표소	도척면 복지회관 2층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제1투표소	중학교 1층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제1투표소	삼성동 동사무소 3층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제4투표소	탁구장 1층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제2투표소	중학교 1층
	시흥시 정왕1동 제1투표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층
	서울 은평구 증산동 제4투표소	노인정 할머니방 1층
	서울 송파구 오금동 제4투표소	초등학교 1층